

제 호

휴게시간 또는 휴일 부여 명령서

사업장명

사업의 종류

대표자 성명

생년월일

소재지

(전화번호 :)

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

년 월 일 발생한 근로시간의 연장에 대하여 「근로기준법」 제53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의 휴게시간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합니다.

휴게시간 : 시간

휴일 : 일

년 월 일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장

직인